

#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04.10]  
(제정) 2023.04.10 조례 제1904호

관리책임부서명 : 정보통신과  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8601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[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](#)」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「[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](#)」에 따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파주시의 책임성,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데이터”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.
- “데이터기반행정”이란 파주시(이하 “시”이라 한다)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·저장·가공·분석·표현하는 등(이하“분석 등”이라 한다)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.
- “공공데이터”란 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시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「[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](#)」(이하 “공공데이터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- “비식별화”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.
-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[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](#)」(이하 “데이터기반행정법”이라 한다) 및 공공데이터법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책무)** ① 파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·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·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,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,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시행계획 수립)**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
2. 직전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
3.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시행계획
4.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
5.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
6.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·협력 방안
7.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작성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6조(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)**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실무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7조(데이터 활용기반 구축)**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·분석·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거나 이미 구축된 관계부처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 결과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8조 (데이터기반행정 주요 활용분야)**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, 주민 복지 향상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·추진하여야 한다.

1. 주요 정책 수립 및 현안 해결을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
2. 안전사고, 재난,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·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
3.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
4. 특정 계층·지역·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
5. 경제적·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
6. 지역의 고용창출, 지역 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
7.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
8.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개선 및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

**제9조(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 분석·활용 제고)**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계획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)**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
2. 행정·교통·안전·관광·교육·복지·의료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
3.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·홍보사업
4.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
5.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

**제11조(데이터기반행정 혁신)** ① 시장은 행정 처리 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행정업무의 간소화·표준화·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정책
2.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2조(책임관)**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(이하 “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과 지원
2.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·제공·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
3.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
4.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
5.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지원
6.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

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으로 하며,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**제13조(데이터의 수집·관리)** ① 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용을 위한 자료 및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·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.

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
**제14조(데이터의 품질관리)**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·평가 및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③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·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공공데이터의 제공)** ① 시장은 시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시민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「[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](#)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

2. 「[저작권법](#)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시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.

④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,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)**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시의 지역적·환경적·문화적·인구학적(성별·연령 등)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
2.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
3.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
4.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7조(사무의 위탁)**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,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18조(포상)** 시장은 데이터 활용 및 정책 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기업·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「[파주시 포상 조례](#)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**제1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**부칙 (2023. 4. 10. 조례 제1904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--